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 10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서근필)

가. 제안이유

- 쓰레기봉투의 무상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청결유지의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분리보관·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규격, 제작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

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환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요청에 따른 행정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카. 폐기물처리실적의 제출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첨 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명당 매월60리터를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1명당 매월 40리터를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차이나게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급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수준과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음
○2,802명에게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홍보 할 계획 무엇인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홍보 안내문 배부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쓰레기봉투를 매월 지급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니 분기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의향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부천시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3명, 환경단체원 3명, 시민대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선정에는 대표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앞으로 협의회 구성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협의회 위원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19호
의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제안년월일 : 2008. 10. 16.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선정 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갖추고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해야 우리시 쓰레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인물로 구성토록 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2. 주요골자

-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위원 선정시 전문지식과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4조 제2항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부천시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자 3명, 환경단체원 3명, 시민대표 3명,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으로 구성한다.” 를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환경단체·시민대표 6명,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4조 제2항)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제13조 (생 략)</p> <p>제14조(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설치·운영)</p> <p>① (생 략)</p> <p>② 협의회의 위원은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환경단체원 3명, 시민대표 3명, 소각장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 으로 구성한다.</p> <p>③~⑤ (생략)</p> <p>제15조~제31조 (생략)</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는 2009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제13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설치·운영)</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u>시의회</u> -----<u>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환경단체·시민대표 6명,</u> ----- ----- -----</p> <p>③~⑤ (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제31조 (개정안과 같음)</p> <p>부칙(개정안과 같음)</p>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3조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이하 “폐기물처리 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폐기물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한 소유자등은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폐기물처리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에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으로 분리한 후에 지정장소나 지정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 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에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배출금지시간

가. 토·일요일: 토요일 06: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나. 휴일: 휴일 전날 06:00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20:00까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질·상태별 분리배출요령 별표 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별표 2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수거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 수익금을 분리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이하 “수집등”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 ①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집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시장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간에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를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등의 수량에 관한 사항

나.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

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대행계획에 관한 사항

마.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이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 시민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수집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제14조(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폐기물의 관리·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환경단체·시민대표 6명,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기본시책의 개발·자문 및 추진사항의 심의
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폐기물에 관한 제도개선제안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규격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불연재쓰레기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규격·색상 및 제작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의 10리터 및 20리터의 색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옅은 녹색으로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부를 활용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의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는 새마을금고 그 밖에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할 것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를 것

②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어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불특정다수인 이용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의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의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간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등을 실시하고 있는 독립

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쓰레기봉투(일반용봉투를 말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환매)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판매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 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는 공급받은 쓰레기봉투 대금을 선납하되,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제2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소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7조(판매대장 등의 확인)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및 쓰레기봉투 판매자의 판매대장과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행정협약)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폐기물처리실적의 제출)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등의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1	가 방	여행용·골프용 일 반	3,000 2,000	17	노래방기계	모 니 터 애플	4,000 4,000
2	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18	노 트 북 컴 퓨 터	모든 규격	2,000
3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19	녹 즈 기	모든 규격	2,000
4	가 습 기	모든 규격	2,000	20	다리미	모든 규격	2,000
5	가정용애플	모든 규격	2,000	21	다리미판	모든 규격	2,000
6	가정용에어컨 실외기	모든 규격	3,000	22	당 구 대	돌은 제외	20,000
7	가정용운동매트	모든 규격	2,000	23	도 마	모든 규격	2,000
8	간 판	60×180cm 이상 60×180cm 미만 입 간 판	7,000 4,000 2,000	24	돛 자 리	모든 규격	2,000
9	개 집	모든 규격	4,000	25	드 럽 통	모든 규격	5,000
10	거 울	120cm 이상 120cm 미만	3,000 2,000	26	뽀 락	모든 규격	4,000
11	고 무 통	90×100cm 이상 90×100cm 미만 70×80cm 이하	4,000 3,000 2,000	27	런닝머신	모든 규격	6,000
12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28	문 갑	문갑 1쪽당 (1m 미만)	4,000
13	금 고	대형(70×100cm 이상) 중형(60×100cm 미만) 소형(50×60cm 미만)	7,000 6,000 5,000	29	문 짝	방문·현관문 창 문	3,000 2,000
14	나 무 류	100ℓ 용량 50ℓ 용량 20ℓ 용량	5,000 3,000 2,000	30	물 탱 크	1 톤당	10,000
15	난 로 (팬히터)	석 유 가 스 전 기	4,000 4,000 2,000	31	미끄럼틀	유 아 용	5,000
16	냉 장 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업소용 300ℓ 이상(대) 업소용 300ℓ 미만(소)	8,000 6,000 4,000 15,000 6,000	32	믹 서 기	모든 규격	2,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33	발지압기	모든 규격	2,000	52	세 면 대	모든 규격	3,000
34	밥 상	1m 이상 1m 미만	3,000 2,000	53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35	방 석	1 인용	2,000	54	쇼 파	대형 4인 이상(개당) 2~3인용(개당) 1인용(개당)	8,000 5,000 3,000
36	방 충 망	모든 규격	2,000	55	수 족 관	1m 이상 1m 미만	7,000 3,000
37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56	스키셋트	모든 규격	3,000
38	변 기 통	변 기 통	3,000 3,000	57	스 텡 퍼	모든 규격	4,000
39	변 압 기	모든 규격	2,000	58	스 피 커	60cm 이상(개당) 60cm 미만(개당)	5,000 2,000
40	병 풍	모든 규격	3,000	59	시계(벽시계)	100cm 이상 100cm 미만	3,000 2,000
41	보 온 병	모든 규격	2,000	60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42	보일러· 유류통	높이 1.5m 이상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7,000 5,000 3,000	61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43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62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44	복 사 기	모든 규격	7,000	63	신 발 장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5,000 4,000
45	블라인드 (버티칼)	모든 규격	3,000	64	쌀 통	다 용 도 일 반	3,000 2,000
46	비 테	모든 규격	2,000	65	썰 크 대	개수대·찬장(개당) 가스렌지대(개당)	3,000 2,000
47	빙 수 기	모든 규격	2,000	66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48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67	액 자	120cm 이상 120cm 미만	3,000 2,000
49	빨 래 관	모든 규격	2,000	68	에 어 컨 (온풍기)	264㎡ 이상 66㎡ 이상 66㎡ 미만	8,000 5,000 3,000
50	서 랫 장	5단 이상 4단 이하	6,000 4,000	69	오디오	대형 이상 중·소형	5,000 3,000
51	선 풍 기	산 업 용 가 정 용	3,000 2,000	70	오디오케이스	모든 규격	4,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71	오 락 기	높이 120cm 이상 높이 60~120cm 미만 높이 60cm 미만	10,000 5,000 4,000	89	장 룡	120cm 이상(1쪽) 90cm~120cm 미만(1쪽) 90cm 미만(1쪽)	15,000 10,000 7,000
72	오르간(전자 키보드 포함)	모든 규격	4,000	90	장 식 장 (차단스)	90×180cm 이상 90×180cm 미만	10,000 6,000
73	옥 매트 (자석요)	2 인용 1 인용	5,000 3,000	91	장 판	5m	2,000
74	옷 걸 이 (행거 포함)	모든 규격	2,000	92	재 봉 틀	모든 규격	4,000
75	욕실장식장 (욕실수납장)	모든 규격	2,000	93	전기밥솥 (전기밥통)	모든 규격	2,000
76	욕 조	모든 규격	4,000	94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
77	우 산	모든 규격	2,000	95	전자렌지	모든 규격	2,000
78	운동용자전거	모든 규격	4,000	96	전 화 기	모든 규격	2,000
79	유 리 판	모든 규격	2,000	97	정 수 기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3,000 2,000
8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98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81	유아용변기	모든 규격	2,000	99	진 열 장 (진열대)	200cm 이상 100cm 이상 100cm 미만	10,000 7,000 5,000
82	유아용욕조	모든 규격	2,000	100	찬 장	1m 이상 1m 미만	4,000 3,000
83	유아용카시트	모든 규격	2,000	101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84	의 자	장의자(4·5인용) 보조의자(2·3인용) 회전의자 일반의자	5,000 3,000 3,000 2,000	102	책 장 (책꽂이)	90×180cm 이상 90×180cm 미만 책상용 3단 이하	7,000 5,000 2,000
85	이 불	대(동절기) 소(하절기)	4,000 2,000				
86	자동판매기	대형(복합기) 소형(전용기)	10,000 5,000	103	청 소 기	업 소 용 가 정 용	3,000 2,000
87	자 전 거	성 인 용 어린이용	3,000 2,000	104	칠 판 (게시판)	100cm 이상 100cm 미만	3,000 2,000
88	장 난 감	그네·목마·자동차 등	2,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105	침 대	1인용 침대셋트	10,000	119	텔레비전	32인치 이상	5,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19~32인치 미만	4,000		
		2인용 침대셋트	15,000			19인치 미만	3,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20	토 스 터	모든 규격	2,000		
		1인 침대틀	5,000			121	파 라 솔	모든 규격	3,000
		2인 침대틀	7,000						
		2층 침대셋트	18,000						
		신생아침대셋트	5,000						
		3단매트(쇼파겸용)	5,000						
106	카 세 트	모든 규격	2,000	122	파 레 트	지게차용	4,000		
107	카 펠트	210×210cm 이상	10,000	123	관 넬	공 사 용	4,000		
		210×210cm 미만	8,000						
		180×180cm 이하	5,000						
108	칸 막 이 (파티션 포함)	경량칸막이	4,000	124	팩시밀리	모든 규격	2,000		
		120cm 이상	3,000						
		120cm 미만	2,000						
109	칼라박스 (수납장)	3단 이상	3,000	125	평 상	1.5m×1.5m 이상	7,000		
		3단 미만	2,000			1.5m×1.5m 미만	5,000		
110	캐 비 넷	철 재	4,000	126	피 아 노	그 랜 드 어프라이트	15,000 10,000		
		파일캐비넷4단 이상	3,000						
		파일캐비넷3단 이하	2,000						
111	커피메이트	모든 규격	2,000	127	항 아 리	50cm 이상	4,000		
						50cm 미만	3,000		
112	컴 퓨 터	모니터·프린터· 본체·자판	각 2,000	128	화 장 대	폭 120cm 이상	8,000		
						폭 120cm 미만	5,000		
113	컴퓨터책상	120cm 이상	4,000	129	화 분	50cm 이상	3,000		
		120cm 미만	3,000			50cm 미만	2,000		
114	큰 솔	모든 규격	2,000	130	환 풍 기	모든 규격	2,000		
115	타 자 기	모든 규격	2,000	131	휠 체 어	모든 규격	2,000		
116	탁 구 대	1대	14,000	132	CD 꽃이	모든 규격	2,000		
117	탁 자	회 의 용 응접실용	6,000 3,000	133	TV받침대	모든 규격	2,000		
118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134	VTR	모든 규격	2,000		

※ 상기 이외의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일반용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2]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질·상태별 분리배출요령(제9조제2항 관련)

1.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종 이 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에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 폐지류와 혼합되지 아니하게 배출
유 리 병	· 음료수병 ·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에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할 것
금 속 캔	· 철캔 ·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하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고 배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에 배출
합 성 수 지 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에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함.

「주」 1.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종이팩은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및 수거함.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전 지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전지(1차전지) ·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타 이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 중형 · 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운 활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활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디셔너 · 컴퓨터 · 오디오 · 이동전화단말기 · 프린터 · 복사기 · 팩시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에는 무상으로 역회수할 것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형 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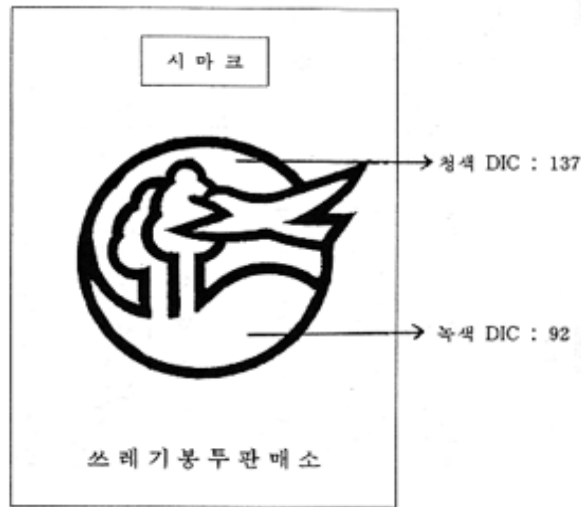
「주」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며 그 밖의 품목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거함. 다만,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

3. 기타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종 이 류 (고지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할 것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할 것
	· 책자, 노트 등	· 비닐코팅된 포장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 류	· 면섬유류 ·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 수거함에 배출
영 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농촌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기 타	·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수거용기에 배출
	· 기타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시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별표 3]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17조제2항 관련)



-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함.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3. 표시의 색은 위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음.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단위: 원)

용량별	구 분	일반용 · 재사용종량제 · 불연재쓰레기 · 음식물전용
		판 매 가 격
3ℓ		120
5ℓ		190
10ℓ		350
20ℓ		700
30ℓ		1,220
50ℓ		1,730
100ℓ		3,420

※ 공공용은 무료로 배부함.

2.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율)} \times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가. ℓ 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봉투의 용량(규격별로 합산한다), 무상지급 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누 값으로 산정한다.

나.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 운반 · 최종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배출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한다.

다.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써 총 봉투 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제2호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제작비는 봉투의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마.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8퍼센트를 적용한다.

※ 판매수수료: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times \text{봉투 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요율} \} \div (1 - \text{판매수수료 요율})$

바.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하여 조정한다.

[수정안 포함]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3조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이하 “폐기물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폐기물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한 소유자등은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폐기물처리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에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으로 분리한 후에 지정장소나 지정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에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배출금지시간

가. 토·일요일: 토요일 06: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나. 휴일: 휴일 전날 06:00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20:00까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질·상태별 분리배출요령별표 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별표 2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수거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 수익금을 분리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이하 “수집등”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 ①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집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시장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간에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를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등의 수량에 관한 사항

나.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

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대행계획에 관한 사항

마.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이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 시민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수집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제14조(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회의 설치·운영) ① 폐기물의 관리·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환경단체·시민대표 6명,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기본시책의 개발·자문 및 추진사항의 심의
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폐기물에 관한 제도개선의 제안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규격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불연재쓰레기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규격·색상 및 제작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의 10리터 및 20리터의 색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옅은 녹색으로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부를 활용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의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는 새마을금고 그 밖에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할 것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를 것

②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어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불특정다수인 이용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의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의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간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등을 실시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쓰레기봉투(일반용봉투를 말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환매)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판매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 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는 공급받은 쓰레기 봉투 대금을 선납하되,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제2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소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7조(판매대장 등의 확인)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및 쓰레기봉투 판매자의 판매대장과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행정협의를)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폐기물처리실적의 제출)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등의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1	가 방	여행용·골프용 일 반	3,000 2,000	17	노래방기계	모 니 터 앰 프	4,000 4,000
2	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18	노 트 북 컴 퓨 터	모든 규격	2,000
3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19	녹 즈 기	모든 규격	2,000
4	가 습 기	모든 규격	2,000	20	다 리 미	모든 규격	2,000
5	가정용앰프	모든 규격	2,000	21	다 리 미 판	모든 규격	2,000
6	가정용에어컨 실외기	모든 규격	3,000	22	당 구 대	돌은 제외	20,000
7	가정용운동매트	모든 규격	2,000	23	도 마	모든 규격	2,000
8	간 판	60×180cm 이상 60×180cm 미만 입 간 판	7,000 4,000 2,000	24	뚫 자 리	모든 규격	2,000
9	개 집	모든 규격	4,000	25	드 럼 통	모든 규격	5,000
10	거 울	120cm 이상 120cm 미만	3,000 2,000	26	뽀 락	모든 규격	4,000
11	고 무 통	90×100cm 이상 90×100cm 미만 70×80cm 이하	4,000 3,000 2,000	27	런닝머신	모든 규격	6,000
12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28	문 갑	문갑 1쪽당 (1m 미만)	4,000
13	금 고	대형(70×100cm 이상) 중형(60×100cm 미만) 소형(50×60cm 미만)	7,000 6,000 5,000	29	문 짝	방문·현관문 창 문	3,000 2,000
14	나 무 류	100ℓ 용량 50ℓ 용량 20ℓ 용량	5,000 3,000 2,000	30	물 탱 크	1 톤당	10,000
15	난 로 (팬히터)	석 유 가 스 전 기	4,000 4,000 2,000	31	미끄럼틀	유 아 용	5,000
16	냉 장 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업소용 300ℓ 이상(대) 업소용 300ℓ 미만(소)	8,000 6,000 4,000 15,000 6,000	32	믹 서 기	모든 규격	2,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33	발지압기	모든 규격	2,000	52	세 면 대	모든 규격	3,000
34	밥 상	1m 이상 1m 미만	3,000 2,000	53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35	방 석	1 인용	2,000	54	쇼 파	대형 4인 이상(개당) 2~3인용(개당) 1인용(개당)	8,000 5,000 3,000
36	방 충 망	모든 규격	2,000	55	수 족 관	1m 이상 1m 미만	7,000 3,000
37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56	스키셋트	모든 규격	3,000
38	변 기 통	변 기 통	3,000 3,000	57	스 텝 퍼	모든 규격	4,000
39	변 압 기	모든 규격	2,000	58	스 피 커	60cm 이상(개당) 60cm 미만(개당)	5,000 2,000
40	병 풍	모든 규격	3,000	59	시계(벽시계)	100cm 이상 100cm 미만	3,000 2,000
41	보 온 병	모든 규격	2,000	60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42	보일러· 유류통	높이 1.5m 이상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7,000 5,000 3,000	61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43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62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44	복 사 기	모든 규격	7,000	63	신 발 장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5,000 4,000
45	블라인드 (버티칼)	모든 규격	3,000	64	쌀 통	다 용 도 일 반	3,000 2,000
46	비 테	모든 규격	2,000	65	썰 크 대	개수대·찬장(개당) 가스렌지대(개당)	3,000 2,000
47	빙 수 기	모든 규격	2,000	66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48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67	액 자	120cm 이상 120cm 미만	3,000 2,000
49	빨 래 관	모든 규격	2,000	68	에 어 컨 (온풍기)	264㎡ 이상 66㎡ 이상 66㎡ 미만	8,000 5,000 3,000
50	서 랫 장	5단 이상 4단 이하	6,000 4,000	69	오디오	대형 이상 중·소형	5,000 3,000
51	선 풍 기	산 업 용 가 정 용	3,000 2,000	70	오디오케이스	모든 규격	4,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71	오 락 기	높이 120cm 이상	10,000	89	장 룡	120cm 이상(1쪽)	15,000
		높이 60~120cm 미만	5,000			90cm~120cm 미만(1쪽)	10,000
		높이 60cm 미만	4,000			90cm 미만(1쪽)	7,000
72	오르간(전자 키보드 포함)	모든 규격	4,000	90	장 식 장 (차단스)	90×180cm 이상 90×180cm 미만	10,000 6,000
73	욕 매트 (자석요)	2 인용 1 인용	5,000 3,000	91	장 판	5m	2,000
74	옷 걸 이 (행거 포함)	모든 규격	2,000	92	재 봉 틀	모든 규격	4,000
75	욕실장식장 (욕실수납장)	모든 규격	2,000	93	전기밥솥 (전기밥통)	모든 규격	2,000
76	욕 조	모든 규격	4,000	94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
77	우 산	모든 규격	2,000	95	전자렌지	모든 규격	2,000
78	운동용자전거	모든 규격	4,000	96	전 화 기	모든 규격	2,000
79	유 리 판	모든 규격	2,000	97	정 수 기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8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98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81	유아용변기	모든 규격	2,000	99	진 열 장 (진열대)	200cm 이상	10,000
						100cm 이상	7,000
						100cm 미만	5,000
82	유아용욕조	모든 규격	2,000	100	찬 장	1m 이상 1m 미만	4,000 3,000
83	유아용카시트	모든 규격	2,000	101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84	의 자	장의자(4·5인용) 보조의자(2·3인용) 회전의자 일반의자	5,000	102	책 장 (책꽂이)	90×180cm 이상 90×180cm 미만 책상용 3단 이하	7,000
			3,000				5,000
85	이 불	대(동절기) 소(하절기)	4,000	103	청 소 기	업 소 용 가 정 용	3,000
			2,000				2,000
86	자동판매기	대형(복합기) 소형(전용기)	10,000 5,000	104	칠 판 (계시판)	100cm 이상 100cm 미만	3,000
87	자 전 거	성 인 용 어 린 이 용	3,000				2,000
			2,000				2,000
88	장 난 감	그네·목마·자동차 등	2,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105	침 대	1인용 침대셋트	10,000	119	텔레비전	32인치 이상	5,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19~32인치 미만	4,000		
		2인용 침대셋트	15,000			19인치 미만	3,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20	토 스 터	모든 규격	2,000		
		1인 침대를	5,000			121	파 라 솔	모든 규격	3,000
		2인 침대를	7,000						
		2층 침대셋트	18,000						
		신생아침대셋트	5,000						
		3단매트(쇼파겸용)	5,000						
106	카 세 트	모든 규격	2,000	122	파 레 트	지게차용	4,000		
107	카 펠트	210×210cm 이상	10,000	123	판 널	공 사 용	4,000		
		210×210cm 미만	8,000						
		180×180cm 이하	5,000						
108	칸 막 이 (파티션 포함)	경량칸막이	4,000	124	팩시밀리	모든 규격	2,000		
		120cm 이상	3,000						
		120cm 미만	2,000						
109	칼라박스 (수납장)	3단 이상	3,000	125	평 상	1.5m×1.5m 이상	7,000		
		3단 미만	2,000			1.5m×1.5m 미만	5,000		
110	캐 비 넷	철 재	4,000	126	피 아 노	그 랜 드 어프라이트	15,000 10,000		
		파일캐비넷4단 이상	3,000						
		파일캐비넷3단 이하	2,000						
111	커피메이트	모든 규격	2,000	127	항 아 리	50cm 이상	4,000		
						50cm 미만	3,000		
112	컴 퓨 터	모니터·프린터· 본체·자판	각 2,000	128	화 장 대	폭 120cm 이상	8,000		
						폭 120cm 미만	5,000		
113	컴퓨터책상	120cm 이상	4,000	129	화 분	50cm 이상	3,000		
		120cm 미만	3,000			50cm 미만	2,000		
114	콘 솔	모든 규격	2,000	130	환 풍 기	모든 규격	2,000		
115	타 자 기	모든 규격	2,000	131	휠 체 어	모든 규격	2,000		
116	탁 구 대	1대	14,000	132	CD 꽃이	모든 규격	2,000		
117	탁 자	회 의 용	6,000	133	TV받침대	모든 규격	2,000		
		응접실용	3,000						
118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134	VTR	모든 규격	2,000		

※ 상기 이외의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일반용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2]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질·상태별 분리배출요령(제9조제2항 관련)

1.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종 이 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에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 폐지류와 혼합되지 아니하게 배출
유 리 병	· 음료수병 ·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에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할 것
금 속 캔	· 철캔 ·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하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고 배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에 배출
합 성 수 지 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에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 · 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함.

「주」 1.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종이팩은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및 수거함.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전 지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전지(1차전지) ·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타 이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 중형 · 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 활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활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디셔너 · 컴퓨터 · 오디오 · 이동전화단말기 · 프린터 · 복사기 · 팩시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에는 무상으로 역회수할 것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형 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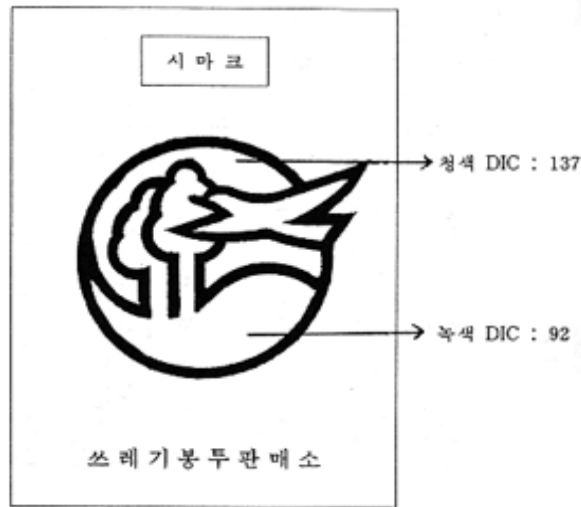
「주」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며 그 밖의 품목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거함. 다만,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

3. 기타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종 이 류 (고지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할 것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할 것
	· 책자, 노트 등	· 비닐코팅된 포장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 류	· 면섬유류 ·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 수거함에 배출
영 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농촌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기 타	·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수거용기에 배출
	· 기타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시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별표 3]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17조제2항 관련)



-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함.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3. 표시의 색은 위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음.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단위: 원)

용량별	구 분	일반용 · 재사용종량제 · 불연재쓰레기 · 음식물전용
		판 매 가 격
3ℓ		120
5ℓ		190
10ℓ		350
20ℓ		700
30ℓ		1,220
50ℓ		1,730
100ℓ		3,420

※ 공공용은 무료로 배부함.

2.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율)} \times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가. ℓ 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봉투의 용량(규격별로 합산한다), 무상지급 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 운반 · 최종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배출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한다.

다.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써 총 봉투 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제2호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제작비는 봉투의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마.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8퍼센트를 적용한다.

※ 판매수수료: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times \text{봉투 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요율} \} \div (1 - \text{판매수수료 요율})$

바.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하여 조정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 등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

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3>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3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07.8.3>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1항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아.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ℓ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

(현행 조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1994. 12. 31 조례 제1314호
- 개정 1996. 11. 19 조례 제1467호
- 개정 1997. 01. 15 조례 제1479호
- 개정 1997. 05. 20 조례 제1506호
- 개정 1997. 12. 01 조례 제1552호
-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 개정 1999. 04. 30 조례 제1657호
- 개정 2000. 05. 24 조례 제1764호

개정 2002. 04. 10 조례 제1883호
개정 2003. 06. 09 조례 제1957호
개정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개정 2004. 06. 05 조례 제2026호
개정 2005. 06. 10 조례 제2097호
개정 2007. 02. 12 조례 제2216호
개정 2008. 01. 10 조례 제22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9.4.30>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9.4.30>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1999.4.3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1999.4.30>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9.4.30>

제3조 (삭제)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기간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2조 규정의 처리 기준등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유선)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법 제12조 규정의 처리 기준등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생활계폐기물)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⑤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배출금지시간

가. 토·일요일 :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나. 휴일 : 휴일 전날 오전 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 <신설 2005.06.10>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분리보관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전담수거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등의 자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을 분리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⑤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③ 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또는처리대행계약에는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 나. 대행기간
- 다. 대행수수료
- 라. 삭제
- 마.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계획서
- 바.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사.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단가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①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및 대행계획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등 폐기물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실태조사·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된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3인, 시민대표 3인,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재활용사업자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06.10>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천시 폐기물처리 기본시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참여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4. 폐기물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등
5. 기타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규격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불연재쓰레기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개정 2004.06.05>

②쓰레기봉투의 규격·색상 및 제작사양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의 10리터, 20리터의 색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옅은 녹색으로 한다.

③삭제

제1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삭제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삭제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쓰레기봉투판매는 새마을금고, 기타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에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사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쓰레기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대금을 선납으로 하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소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시장은 쓰레기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7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

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4.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5. 삭제

제28조(판매대장등의 확인)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판매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02.12.>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9조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1	가방	여행용,골프용 일반	3,000 2,000	17	노래방기계	모니터 앰프	4,000 4,000
2	가스렌지	모든규격	2,000	18	노트북 컴퓨터	모든규격	2,000
3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4,000 2,000	19	녹즙기	모든규격	2,000
4	가습기	모든규격	2,000	2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5	가정용앰프	모든규격	2,000	21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6	가정용에어컨 실외기	모든규격	3,000	22	당구대	돌제외	20,000
7	가정용 운동매트	모든규격	2,000	23	도마	모든규격	2,000
8	간판	60×180cm이상 60×180cm미만 입간판	7,000 4,000 2,000	24	돛자리	모든규격	2,000
9	개집	모든규격	4,000	25	드럼통	모든규격	5,000
10	거울	120cm이상 120cm미만	3,000 2,000	26	뿔틀	모든규격	4,000
11	고무통	90×100cm이상 90×100cm미만 70×80cm이하	4,000 3,000 2,000	27	런닝머신	모든규격	6,000
12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4,000 2,000	28	문갑	문갑1쪽당 (1m미만)	4,000
13	금고	대형(70×100cm이상) 중형(60×100cm미만) 소형(50×60cm미만)	7,000 6,000 5,000	29	문짝	방문, 현관문 창문	3,000 2,000
14	나무류	100ℓ 용량 50ℓ 용량 20ℓ 용량	5,000 3,000 2,000	30	물탱크	1톤당	10,000
15	난로 (팬히터)	석유 가스 전기	4,000 4,000 2,000	31	미끄럼틀	유아용	5,000
16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업소용300ℓ 이상(대) 업소용300ℓ 미만(소)	8,000 6,000 4,000 15,000 6,000	32	믹서기	모든규격	2,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33	발지압기	모든규격	2,000	52	세면대	모든규격	3,000
34	밥상	1m이상 1m미만	3,000 2,000	53	세탁기	모든규격	4,000
35	방석	1인용	2,000	54	쇼파	대형4인이상(개당) 2~3인용(개당) 1인용(개당)	8,000 5,000 3,000
36	방충망	모든규격	2,000	55	수족관	1m이상 1m미만	7,000 3,000
37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56	스키셋트	모든규격	3,000
38	변기통	변기 물통	3,000 3,000	57	스텝퍼	모든규격	4,000
39	변압기	모든규격	2,000	58	스피커	60cm이상(개당) 60cm미만(개당)	5,000 2,000
40	병풍	모든규격	3,000	59	시계(벽시계)	100cm이상 100cm미만	3,000 2,000
41	보온병	모든규격	2,000	60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2,000
42	보일러, 유류통	높이 1.5m이상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7,000 5,000 3,000	61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43	보행기	모든규격	2,000	62	식탁	6인용이상 6인용미만	5,000 4,000
44	복사기	모든규격	7,000	63	신발장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5,000 4,000
45	블라인드 (버티칼)	모든규격	3,000	64	쌀통	다용도 일반	3,000 2,000
46	비데	모든규격	2,000	65	썩크대	개수대,찬장(개당) 가스렌지대(개당)	3,000 2,000
47	빙수기	모든규격	2,000	66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48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67	액자	120cm이상 120cm미만	3,000 2,000
49	빨래판	모든규격	2,000	68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66㎡이상 66㎡미만	8,000 5,000 3,000
50	서랍장	5단이상 4단이하	6,000 4,000	69	오디오	대형이상 중·소형	5,000 3,000
51	선풍기	산업용 가정용	3,000 2,000	70	오디오케이스	모든규격	4,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71	오락기	높이120cm이상 높이60~120cm미만 높이60cm미만	10,000 5,000 4,000	89	장롱	120cm이상 1쪽 90cm~120cm미만 1쪽 90cm미만 1쪽	15,000 10,000 7,000
72	오르간(전자 키보드포함)	모든규격	4,000	90	장식장(차단스)	90×180cm이상 90×180cm미만	10,000 6,000
73	욕매트 (자석요)	2인용 1인용	5,000 3,000	91	장판	5m	2,000
74	옷걸이 (행거포함)	모든규격	2,000	92	재봉틀	모든규격	4,000
75	욕실장식장 (욕실수납장)	모든규격	2,000	93	전기밥솥 (전기밥통)	모든규격	2,000
76	욕조	모든규격	4,000	94	전기장판	모든규격	3,000
77	우산	모든규격	2,000	95	전자렌지	모든규격	2,000
78	운동용 자전거	모든규격	4,000	96	전화기	모든규격	2,000
79	유리판	모든규격	2,000	97	정수기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3,000 2,000
8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98	조명기구	모든규격	2,000
81	유아용변기	모든규격	2,000	99	진열장 (진열대)	200cm이상 100cm이상 100cm미만	10,000 7,000 5,000
82	유아용욕조	모든규격	2,000	100	찬장	1m이상 1m미만	4,000 3,000
83	유아용 카시트	모든규격	2,000	101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84	의자	장의자(4,5인용) 보조의자(2,3인용) 회전의자 일반의자	5,000 3,000 3,000 2,000	102	책장(책꽂이)	90×180cm이상 90×180cm미만 책상용3단이하	7,000 5,000 2,000
85	이불	대(동절기) 소(하절기)	4,000 2,000				
86	자동판매기	대형(복합기) 소형(전용기)	10,000 5,000	103	청소기	업소용 가정용	3,000 2,000
87	자전거	성인용 어린이용	3,000 2,000	104	철판(게시판)	100cm이상 100cm미만	3,000 2,000
88	장난감	그네,목마,자동차 등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105	침대	1인용침대셋트	10,000	119	텔레비전	32인치이상	5,000
		1인용매트리스	5,000			19~32인치미만	4,000
		2인용침대셋트	15,000			19인치미만	3,000
		2인용매트리스	8,000	120	토스터	모든규격	2,000
		1인침대틀	5,000	121	파라솔	모든규격	3,000
		2인침대틀	7,000				
		2층침대셋트	18,000				
		신생아침대셋트	5,000				
		3단매트(쇼파겸용)	5,000				
106	카세트	모든규격	2,000	122	파레트	지게차용	4,000
107	카펫	210×210cm이상	10,000	123	판넬	공사용	4,000
		210×210cm미만	8,000				
		180×180cm이하	5,000				
108	칸막이 (파티션포함)	경량칸막이	4,000	124	팩시밀리	모든규격	2,000
		120cm이상	3,000				
		120cm미만	2,000				
109	칼라박스 (수납장)	3단이상	3,000	125	평상	1.5m×1.5m이상	7,000
		3단미만	2,000			1.5m×1.5m미만	5,000
110	캐비닛	철재	4,000	126	피아노	그랜드 어프라이트	15,000
		화일캐비닛4단이상	3,000				10,000
		화일캐비닛3단이하	2,000				
111	커피메이트	모든규격	2,000	127	항아리	50cm이상	4,000
						50cm미만	3,000
112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본체, 자판	각 2,000	128	화장대	폭 120cm이상	8,000
						폭 120cm미만	5,000
113	컴퓨터책상	120cm이상	4,000	129	화분	50cm이상	3,000
		120cm미만	3,000			50cm미만	2,000
114	콘솔	모든규격	2,000	130	환풍기	모든규격	2,000
115	타자기	모든규격	2,000	131	휠체어	모든규격	2,000
116	탁구대	1대	14,000	132	CD꽂이	모든규격	2,000
117	탁자	회의용	6,000	133	TV받침대	모든규격	2,000
		응접실용	3,000				
118	탈수기	모든규격	2,000	134	VTR	모든규격	2,000

※ 상기이외의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일반용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적용

[별표 2]<개정 2004. 01. 15>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제2조·제7조·제10조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0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테 묶음
나.유리병	0 음료수병,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0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0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라.합성수지류	0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0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 라목의 합성수지류중 필름류(과자봉지 등)는 2004년부터 분리하여 배출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0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나.타이어	0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0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전자제품	0 TV,냉장고,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형광등	0 형광등	-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전지류,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 형광등은 권역별로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2004년부터 분리배출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수도권은 시범실시 중)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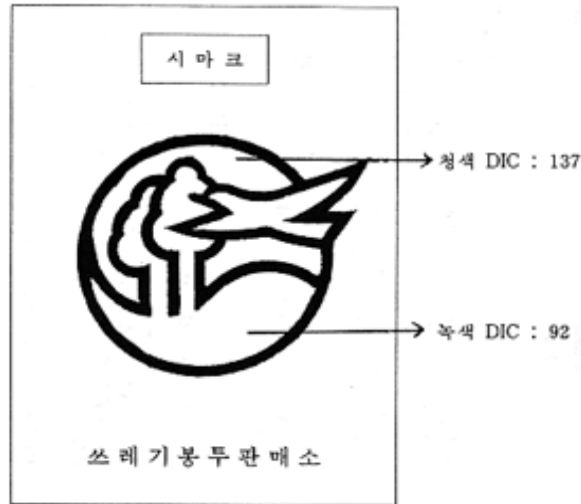
※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2005년부터 분리수거 실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0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0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포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0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0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0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0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다.의류	0 면섬유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0 기타 의류	
라.영농 폐기물류	0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0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기타	0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관류, 카페트,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별표 5]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08.1.10>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제19조 관련)

1.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단위: 원)

용량별	구 분	일반용 · 재사용 종량제 · 불연재쓰레기 · 음식물전용
		판 매 가 격
	3ℓ	120
	5ℓ	190
	10ℓ	350
	20ℓ	700
	30ℓ	1,220
	50ℓ	1,730
	100ℓ	3,420

※ 공공용은 무료로 배부함.

2.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times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가. ℓ 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나.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 운반 ·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

다.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써 총 봉투판매 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제2호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제작비는 봉투의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마.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8%를 적용한다.

※ 판매수수료: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times \text{봉투 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요율} \} \div (1 - \text{판매수수료 요율})$

바.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하여 조정한다.